

의안번호	2206132
의 퇴 인	안규백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4.
추계번호	24C5597

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사업) 및 안 제13조(보조금 및 출연)	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안 제5조) 1. 세종대왕종합기념관(이하 “기념관”이라 한다)의 건립 및 운영 2.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 주관 3. 세종대왕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·조사·홍보·연구 및 전산화 4. 세종대왕 유적의 보존·관리·조사·홍보 및 연구 5. 세종대왕의 추모와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.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.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(안 제13조)	재량규정
2	안 제14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사업) 및 안 제13조(보조금 및 출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)	

2. 상세사유

-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(안 제5조 및 안 제13조)
 - 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향후 예산 편성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, 현시점에서 그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- 국·공유재산의 무상 대부(안 제14조)
 - 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그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무상대부가 가능한 범위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, 그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과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